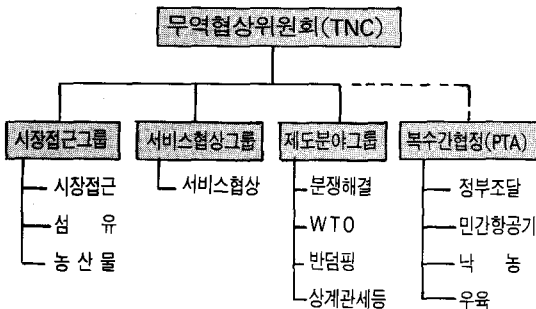


# 정부조달협정 타결내용 및 입찰·계약제도 개선방안

이우철 / 재무부 회계제도과장

## I. UR협상구조

### [1]기본구조



### [2]정부조달협상의 진행

가)정부조달협정은 MTN 협정중의 하나로 민간항공기 협정, 낙농협정, 우육협정과 함께 가입회원국만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PTA)이므로 GATT

와는 법적으로 무관하지만 금번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은 전체 UR 협상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나)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관할을 받도록 하여 WTO와 법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 II. GATT/정부조달협정 개요

### [1]정부조달협정 성립배경과 가입국

#### 가)성립배경

①정부조달은 비상업적 거래로서, 경제정책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었다.

②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각국 경제에서 공공부분의 비중이 증대, 정부조달이 세계교역의 큰 부분을 차지(10% 내외)하게 됨에 따라 세

계교역의 진정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비관세장벽 제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나)협정 성립

·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의 MTN 협정의 하나로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되어 '81. 1. 1부터 발효되었으며, 1988. 2.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된 바 있다.

다)가입국(23개국)

· EC(12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

[2]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가)협정적용범위

①적용기관

· 중앙정부기관  
· 조달절차나 관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감독하의 기관  
※지방정부와 통신, 전력, 운송, 상·하수도 4개 부문(Exclusive Sector)은 제외

②적용대상

· 13만 SDR(약 1억원)이상의 물품구매(리스, 임차 및 할부구매 포함)  
· 원칙적으로 서비스(건설포함) 구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상품구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서비스의 경우 상품자체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나)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각 회원국은 무조건적으로 타회원국 원산의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산품 및 공급자에 부여하는 조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내국민대우)

다)기술사양

①기술사양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되며, 조달물품의 설계(Design)보다는 성능(Performance)을 요건으로 해야 하며, 이는 국제표준 및 각국의 기술협정이 공인한 국가표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②특히 특정상표나 특허, 또는 특정디자인이나 형태, 특정원산지나 생산자에 한한다는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③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연요구 및 수락을 금지한다.

라)입찰절차

①입찰가격

조달기관은 입찰가격과 관련하여 외국입찰자 상호간 또는 국내외 입찰자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자격심사

입찰참가조건은 계약이행능력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국한하고 입찰참가자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감안하여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조달기관은 공개입찰 또는 지명입찰시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GATT 공동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하나로 계약의 주대상, 응찰시한, 계약관련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 요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낙찰자 선정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나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마)정보제공

①회원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법규, 결정, 절차규정을 부속서에 열거된 출판물에 즉시 공표하여 타 회원국 및 공급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조달기관은 낙찰후 60일 이내에 낙찰결과

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요청시 자격 심사 탈락, 입찰참가거부, 유찰등에 대한 사유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바)예외규정**

국가안보, 공공질서,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지적재산권보호, 장애인, 자선단체, 재소자노동에 의한 생산품의 보호등을 위해서는 협정적용배제가 가능하다.

**[3]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

가)'89년부터 미국 등의 주도로 기존의 정부조달협정본문의 개선 및 협정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해 가입국간에 추진된 협상으로 UR협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확장협상의 주요내용**

	기존협정	확장협상
대상기관의 확대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독하의 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하의 기관
적용범위의 확대	물품의 조달계약	물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계약
협정의 개선	입찰 이의신청절차, 입찰절차 개선 등 현행 협정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III. 우리나라의 협상추진 경위와 경과**

**[1]기존협정 가입추진**

가)'79~'82년간 3차례의 가입현상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수준과 우리나라의 양허수준의 현격한 차이로 협상 결렬

- 1차 양허안('79) : 조달청, 11개 품목
- 2차 양허안('80) : 조달청, 21개 품목
- 3차 양허안('82) : 조달청, 32개 품목

나)'90년 6월 : GATT/정부조달협정에 가입키로 하고 가입안을 확정하고 GATT에 제출 (결재장관회의에서 협상주관은 상공부, 제도보완은 재무부에서 하도록 결정)

**[2]확장협상 추진경과**

- '91.4 : 기존 협정가입국과의 양자협상시 미국 등 주도가입국이 우리나라에 게 확장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
- '91.8 :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아국의 확장협상 참여 결정
- '92.5 : 확장협상을 위한 우리나라의 양허안을 확정, GATT에 제출
- '93.10 : 제2차 양허안 GATT에 제출
- '93.12 : 제3차 최종양허안 GATT에 제출, 아국의 협정가입이 타결되었다.

**IV. 정부조달협정 확장협상 결과**

**[1]협정문 개선협상(Frame Work협상)**

가)신협정문 채택

전문, 본문 24개조, 4개 부속서로 구성

나)신협정문의 주요내용

**①협정적용범위 확대**

· 적용대상기관-기존협정의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독하의 기관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하의 기관으로 확대

· 적용범위-물품의 조달계약에서 물품 및 건설, 서비스의 조달계약까지 확대하였으며, 전력·운송·상하수도 등 기존협정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협정 적용 범위에 포함

**②조달절차의 명확화**

협정본문을 기존협정의 9개 조문에서 24개 조문으로 늘려 조달절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화·구체화하여 조달의 투명성을 제고

**③구제조치의 도입**

입찰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하고,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하여 협정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④협정발효시기**

한국, 홍콩을 제외한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신협정은 '96. 1. 1부터 발효하고, 한국, 홍콩에 대해서는 '97. 1. 1부터 발효키로 했다.

[2] 양허협상 (Coverage 협상)

가) 우리나라의 최종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42개 중앙행정기관 · 안기부 등 4개 안보관련 기관 제외	· 물 품(13만 SDR) · 서비스(13만 SDR) · 건 설(500만 SDR)
지방정부	· 6개시 및 9개도	· 물 품(20만 SDR) · 서비스(20만 SDR) · 건 설(1,500만 SDR)
기타기관	· 한전, 한국통신 등 23개 정부 투자기관 · 한전 : 중전기품목 일부제외 · 한국통신 : 통신제품 및 일반제품 제외	· 물 품(45만 SDR) · 건 설(1,500만 SDR)
서비스 및 건설	· 중앙, 지방, 기타기관 · 기타 기관 서비스는 비양허	· 서비스 : 사업, 통신, 환경, 운송 등 49개 업종(금융서비스 제외) · 건설 : 일반 및 전문건설업 7개 업종
공통예외	· 재판에 관련 구매 · 중소기업 특별구매 · 농산물 구매 · 인공위성 구매(발효후 5년간)	

나) 각국의 양허안

① 미국

· 미국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87개 연방정부기관 · 기관별 예외 · 농무성의 농원지원계획 구매 · 교통성의 연방항공청구매등	· 물 품(13만 SDR) · 서비스(13만 SDR) · 건 설(500만 SDR)
지방정부	· 24개 주정부 · 플로리다, 미시건, 뉴욕 등 일부 주의 경우 건축용철강재, 자동차, 석탄구매 등에 예외 설정	· 물 품(35만 SDR) · 서비스(35만 SDR) · 건 설(500만 SDR)
기타기관	· TVA, 에너지성 산하의 5개지역 전력판매청 St Lawrence 해저 개발공사 등 7개기관	· 물 품(40만 SDR) · 서비스(40만 SDR) · 건 설(500만 SDR)

	양허 기관	양허 범위
	· 지역전력청이 지역전력회사에 자금지원하는 경우 Buy American Act 적용	
서비스	· 다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양허 · 운송서비스, 준설서비스, 해외주둔군대 지원을 위한 서비스, 건물관리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이외의 통신서비스 등 공공시설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지방정부의 인쇄서비스	
건 설	· CPC 51군 모두 양허	
공통예외	· 소기업을 위한 구매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ㄱ) 지방 및 기타기관의 건설하한선은 한국에 대하여는 한국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건설하한선인 1,500만 SDR로 유지한다.

ㄴ) 미국과 일본, EC, 캐나다간의 지방정부 및 기타기관의 양허범위확대에 관한 협상의 결과로 추가양허되는 기관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확대적용하기로 합의 했다.

② EC 및 EFTA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 EC 및 EFTA 국가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각 회원국별로 모든 중앙정부 기관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 이태리 재무성의 담배, 소금 판매를 위한 구매를 제외하고는 기관별 예외는 거의 없음	· 물 품(13만 SDR) · 서비스(13만 SDR) · 건 설(500만 SDR)
지방정부	· 지방수도시등 하급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기관과 지방정부차원에서 공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	· 물 품(20만 SDR) · 서비스(20만 SDR) · 건 설(500만 SDR)
기타기관	· 상수도, 전력, 도시교통(지하철, 버스, 케이블 등), 항공, 운송, 해운분야의 공공기관과 독점사업 · 통신분야, 철도분야기관만 미양허	· 물 품(40만 SDR) · 서비스(40만 SDR) · 건 설(500만 SDR)

양허 범위	
서비스	· 사업, 통신, 금융, 운송 등 정부조달의 의미가 있는 모든 서비스 양허
건설	· CPC 51군 모두 양허
공통예외	· 농업지원 및 식량원조를 위한 농산물 구매는 예외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기관의 상수도, 에너지, 운송, 통신분야의 활동과 관련한 구매 · 기타기관의 재판매관련 구매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한·EC 및 EFTA 국가와의 양허불균형이 현저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양허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ㄱ. EC 측의 협정적용배제

→한국이 양허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양허한 공항, 도시교통(지하철 포함), 일부서비스, 중전기기품목(HS 8504, 8535, 8537, 8544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EC측도 협정적용을 배제하여 한국기업의 입찰참가를 배제했다.

ㄴ. EC 측의 이의신청절차 배제

→한국이 양허하지 아니한 지방정부소도시, 500-1,500만 SDR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소기업제품구매에 대하여는 양허는 하되, 한국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이용을 배제했다.

ㄷ. 우리측의 협정적용배제

→철도청이나 공항, 도시교통(지하철 포함)관련기관 (예: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공항, 도시교통과 관련된 조달에 대해서는 EC회원국 기업의 입찰참가를 배제했다.

③ 캐나다

· 캐나다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모든연방정부기관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 · 건설(500만 SDR)
지방정부	· 주정부 수준기관	· 물 품(35.5만 SDR) · 서비스( / / ) · 건설(500만 SDR)

기타기관	· 정부소유하의 모든기관 양허계획 (양허기관은 미제시)	· 물 품(35.5만 SDR) · 서비스( / / ) · 건설(500만 SDR)
서비스	· 사업,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 관련 서비스 양허	
건설	· CPC 51군 전부 양허. 단 준설공사와 운수성의 건설공사는 제외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중앙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타결하고 지방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은 우리측에서 협정적용을 배제하여 추후 협상 예정

④ 일본

· 일본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국회, 법원을 포함한 31개 중 양정부기관 - 각 기관은 부속기관, 지방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 · 건설(500만 SDR)
지방정부	· 상급지방정부인 47개도(都), 도(道), 부(府), 현(縣)과 동경시등 12개 주요시(市) 양허 - 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속기관 및 출장소를 포함함. · 예외 - 운송상의 안전과 관련된 구매 - 전력생산 및 분배를 위한 구매	· 물 품(20만 SDR) · 서비스( / / ) · 건설(1,500만 SDR)
기타기관	· 9개 철도회사를 포함한 84개 정부설립 특별법인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 · 건설(1,500만 SDR)
서비스	· 정부조달의 의미가 있는 서비스 대부분 양허	
건설	· CPC 51군 양허	
공통예외	·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사용할 목적의 구매 · 협정가입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특정조항, 협회와 체결하는 계약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별도 예외없이 전범위에 걸쳐 타결

⑤ 홍콩

- 홍콩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69개 정부기관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500만 SDR)
지방정부	· 2개 지방정부기관	· 물 품(20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500만 SDR)
기타기관	· 5개 주요기관(주택, 병원, 공항, 철도분야) (양허기관은 미제시)	· 물 품(40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500만 SDR)
서 비 스	· 운송, 사업, 환경, 금융서비스 등을 양허	
건 설	· CPC 51군 양허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양국의 양허한 내용으로 유보없이 타결

⑥ 이스라엘

- 이스라엘 양허안

	양허 기관	양허 범위
중앙정부	· 23개 정부기관	· 물 품(13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850만 SDR)
지방정부	· 예루살레, 텔아비브, 하이 파 3개시와 지방의 경제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업(기관)	· 물 품(25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950만 SDR) · 건 설(950만 SDR)
기타기관	· 공항, 철도, 방송국, 통신 등 11개기관	· 물 품(35.5만 SDR) · 서비스( / / ) · 건 설(850만 SDR)
서 비 스	· 건축,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등 양허	
건 설	· CPC 51군 양허	

- 우리나라와 타결한 내용  
별도 예외없이 양허한 내용으로 타결

[3] 정부조달시장 규모

가) 금번 우리나라의 가입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양허안에 의한 시장개방 규모는 약 10조원(125억불)으로 파악

나) 여타국의 확장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규모는 4,000억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중 주요국의 규모는 EC(1,500억불), 미국(950억불), 일본(400억불), 캐나다(200억불)의 순이다.

V. 정부조달협정문상의 조달절차

[1] 분할계약의 금지

가) 조달기관들은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액평가방법을 선택하거나 조달을 분할시켜서는 안된다.

나) 특정조달요구가 두건이상의 계약으로 분할되어 체결된 경우에는 ① 직전 회계년도나 과거 12개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반복계약의 실제 가액 또는 차후 1년간의 물량 및 금액의 예상되는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② 최초계약이 체결된 회계년도나 당해 계약이 체결된 후 12개월동안의 반복계약의 추정가액을 계약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금액이 각 기관별 협정 적용 하한선 이상이 될 경우 국제입찰을 하여야 한다.

[2] 입찰방법

가) 조달기관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입찰절차를 운용하여야 한다.

나) 조달기관은 경쟁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입찰방법의 종류

① 공개경쟁입찰절차(Open Tendering Procedures)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

② 지명경쟁입찰절차(Selective Tendering Procedures)

조달기관이 초청한 공급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

③수의계약절차 (Limited Tendering Procedures)

제한된 조건하에 조달기관이 공급자를 개별적으로 접촉·선정하는 절차

라)지명경쟁 입찰절차 실시요건

①선택입찰시 조달기관은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한 각각의 조달에 대하여 국·내외 공급자들이 최대한 입찰에 참여하도록하고, 입찰에 참가할 공급자를 공정하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상설유자격 공급자 목록을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목록에 등재된 공급자중에서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목록에 등재된 공급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사를 받지 않은 공급자를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경우 조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그 참가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마)수의계약 실시요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외국인 공급자의 차별수단으로 또는 국내공급자의 보호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이 없는 경우,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이 된 경우, 입찰의 필요요건을 따른 입찰서가 없거나 입찰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공급자가 입찰한 경우

②예술품, 또는 특허권보호와 관련한 이유때문에 특정공급자에게만 조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

③긴급한 사유로 인한 조달로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면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④기존의 설비교환 또는 설비확장의 경우로 기존 공급자를 교체하면 기존설비와 호환성이 문제되는 경우

⑤조사, 실험, 연구, 개발등을 위한 계약에 따라 개발된 원형(Prototype)이나 최초 생산품을 조달하는 경우

⑥당초 조달계획의 범위내에서 추가건설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기술적으로 추가건설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단 주계약의 50% 초과 불가)

⑦최초의 건설서비스 조달계획공고에 명기된 경우로 유사한 건설서비스가 반복되는 경우

⑧일반시장에서 구매했던 물품

⑨극히 단기간에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의해 구매하는 경우

⑩디자인 경영대회의 우승자에게 낙찰하는 계약의 경우

[3]자격심사

가)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내공급자와 외국인공급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나)입찰참가자격조건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자격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표되어야 한다.

다)입찰참가자격조건은 해당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내공급자와 외국인공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공급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때 국내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업활동도 참작하여야 한다.

라)자격심사과정과 그 소요시간은 특정공급자를 입찰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조달협상의 타결로 국내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조달체계 전반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  
**입찰시 공사에정가격도 작성준식을 개정, 조달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정부노임단가를 개선해 시중노임단가수준으로 현실화.**  
**입찰방법으로는 지명경쟁입찰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의계약사유도 협정문에서 인정하는 범위로 조정**

마)상설·유자격공급자 목록을 유지하는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언제든지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바)파산이나 허위신고등의 이유로 특정공급자를 배제시킬 수는 있으나 내국인대우 및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조달기관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상이한 자격심사절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한 자격심사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회원국은 조달기관 사이의 자격심사절차의 차이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4]입찰공고시기

가)공개입찰의 입찰서 접수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상설 유자격 공급자 명부를 사용하지 않은 지명경쟁입찰의 입찰참가서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일로부터 25일 이상이어야 하며, 입찰서 접수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상설 유자격 공급자 명부를 사용하는 지명경쟁입찰이 있어서 경우는 입찰서 접수기간은 입찰초청서의 최초발급일로부터 4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다음의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과거 12개월이내에 별도의 입찰공고를 한 경우는 40일의 입찰서 접수마감기간을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단축 가능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일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1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반복계약에 대한 두번째 이후의 공고의 경우는 40일의 입찰서 접수마감기간을 24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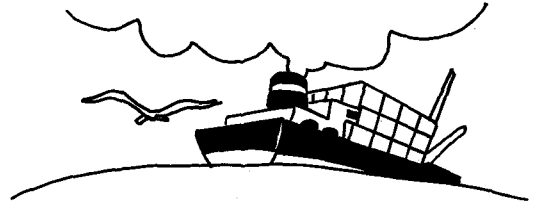
바)긴급한 상황때문에 40일간의 입찰서 접수기간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입찰서 접수마감시한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5]입찰공고의 내용

가)조달기관은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

달에 대하여 부속서II에 등재된 출판물<sup>1)</sup>을 통하여 입찰참가초청을 하여야 한다.

주<sup>1)</sup>각 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인 입찰공고를 게재하는 출판물을 부속서II에 수록하여 WTO/정부조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입찰공고는 부속서II에 등재된 출판물에 게재하여야 함.



나)모든 입찰참가초청은 협정문 9조6항의 계획조달공고(입찰공고)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지방정부기관과 기타기관은 통상의 입찰공고(Notice of proposed Procurement)보다 공고내용이 간략한 조달계획공고(Notice of Planned Procurement)나 자격심사제도에 관한 공고로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라)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조달대상물품이나 용역의 성질과 수량
- ②입찰절차의 종류
- ③물품의 납품기일
- ④조달기관의 주소, 자격등록신청서 또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자 및 이에 사용될 언어
- ⑤공급자에게 주소, 자격등록신청서 또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자 및 이에 사용될 언어
- ⑥입찰설명서 구득에 소요되는 금액 및 지불요건 등

마)조달기관은 각각의 조달에 관하여 WTO 공용어(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하나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약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①계약주 대상
- ②입찰서 접수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한

③계약관련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의 주소  
 바)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유자격 공급자의 명부를 유지하고 조달기관은 부속서III에 등재된 출판물<sup>2)</sup>에 다음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주2) 각 국은 자국의 상설 유지계약공급자의 명부를 사용하는 조달기관이 매년 동명부에 관한 정보를 공고하는 출판물을 부속서III에 수록하여 WTO/정부조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조달기관은 매년 동 출판물에 상설 유지계약 공급자의 명부 작성과 관계되는 정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상설유자격 공급자의 목록
- ② 동 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공급자의 자격요건 및 이를 검증하는 방법
- ③ 동 목록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절차
- ④ 당해 공고가 입찰참가초청서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

**[6] 입찰서의 접수 및 낙찰**

가) 입찰서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낙찰대상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의 주요요건에 합치되어야 하며, 자격있는 공급자가 입찰한 것이어야 한다.

다) 다른 입찰자의 제시가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 조달기관은 동 입찰자에게 계약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증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공공이익을 위하여 조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한, 조달기관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나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7] 이의 신청절차**

가) 회원국은 특정조달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급자들이 조달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절차는 법원에 의해 수행되거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사법절차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다) 이의신청절차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 ① 협정의 위반사항을 교정하고 사업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달절차의 중지를 포함한 신속한 잠정조치

② 이의제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판정의 가능성

③ 협정의 위반사항 교정 및 손해 또는 피해의 보상. 단, 손해나 피해의 보상은 응찰준비나 이의제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한정시킬 수 있다.

**VI. 정부조달제도 개선방안**

**[1] 정부 조달협절체계의 개선**

가) 현행제도

① 현행 예산회계법은 특별히 내·외국인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입찰의 경우 적용할 별도의 규정으로 의자구매계약규정과 특정물품들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② 동 특례규정은 입찰공고기간, 입찰보증금, 입찰서 개찰후의 조건변경, 대가지급, 분쟁처리등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나) 개선방향

① 조달제도 전반에 걸쳐 외국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폐지

② 조달체계 전반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개선

**[2] 예정가격 작성**

가) 현행제도

① 조달기관은 각각의 조달에 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입찰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②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나) 개선방향

·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개정하여 조달기관이 물품이나 공사의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등도 정할 수 있게 하며, 예정가격작성의 기초가격인 정부노임단가가 시중노임보다 낮게 고시되는 현제도를 개선

[3]입찰방법

가)현행제도

· 현행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제한된 조건하에서 지명경쟁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개선방향

①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명경쟁입찰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달기관이 발주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자격있는 공급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행 법령상의 수의계약사유를 축소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조문의 수의계약사유를 변경하여 협정문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4]자격심사

가)현행제도

· 예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지하철·댐공사 등 일부공사에 대하여만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만 갖추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개선방향

①신축적인 자격심사규정 마련

일반적인 사항·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각 조달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세부심사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②각 조달기관에 인증공급자 명부 작성을 권장하여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5]입찰공고기간

가)현행제도

①입찰공고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로부터 7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전 또는 개찰일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나)개선방향

· 협정문에서 정한 입찰공고 기간에 적합하도록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한다.

[6]입찰공고의 방법 및 내용

가)현행제도

①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공사 : 3억원, 제조 : 1억원, 물품의 구매, 기타용역 : 5천만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②입찰공고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개선방향

①관보를 부속서 II의 출판물로 사무국에 등록하고 모든 입찰공고를 관보에 공표하도록 한다

②양허대상 입찰시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한다.

③요약공고는 영어로써 하며 입찰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7]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지명

가)현행제도

·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명의 기준은 공사의 경우는 도급한도액, 특수한 기술 보유, 제조 기타의 경우는 기술·기계·기구, 생산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지명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개선방향

①도급한도액 위주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 기준을 개선하여 업체의 도급한도액, 공사이행 실적, 신인도, 재정상태, 기술적 능력보유 등 실제계약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공급업자를 발주관서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 강구

**[8]낙찰제도**

가)현행제도

①최저가낙찰제가 원칙이며 일정금액이하의 공사 또는 용역계약은 제한적최저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②종합낙찰제,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가격외에 설계능력, 품질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다.

나)개선방향

①종합낙찰제, 설계시공입찰제도, 대안입찰 제도등을 활성화

②가격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계약이행능력, 품질, 성능등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9]입찰이의신청 절차**

가)현행제도

①입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공식기구는 없으나 재무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분쟁을 처리한다.

②특례규정에 특정조달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특례조달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나)개선방향

·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찰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

라)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해외조달시장의 동향과 조달제도에 관한 정부를 신속히 공급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케 한다.

**[2]세부추진계획**

가)법령정비대상

①예산회계법

②예산회계법시행령

③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④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및 규칙

⑤외자구매규정

⑥회계예규, 회계통칙 등

나)법령정비추진일정

①'94. 12. 31 예산회계법등 개정완료

②'95. 1.1-'95. 12. 31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

③'96. 시행결과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④'97. 1. 1 정부조달시장 개방

**VII. 정부조달제도개선 추진계획**

**[1]기본방향**

가)입찰·계약관련제도를 국제관행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제고하고, 업계의 대외경쟁력을 제고 시킨다.

나)건설부, 상공부,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학계·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내업체의 충격을 최소화

다)조기('94 말)에 예산회계법령등을 개선하여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시행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업계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케 한다.